

205.1호

행 정 명 령

**뉴욕을 방문하는 여행자에 대한 검역 제한**

뉴욕주가 코로나19 확산 속도를 성공적으로 둔화시켰으므로

뉴욕주가 가장 높은 감염률을 보인 주에서 가장 낮은 감염률을 보이는 주로 바뀌었으며, 코로나19 확산을 잘 통제하고 있는 소수의 주에 해당하므로,

주지사가 뉴욕주 재개에 신중하고 점차적인 증거 기반 접근 방식을 착수했으므로,

질병 통제 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CDC)가 전 세계 보건 위협과 관련하여 타국에서 미국으로 입국하는 이동자의 위험 수준을 결정하므로,

당일 기준 CDC에 따르면 전 세계 국가의 1/3만이 코로나19 전염 수준이 "낮음"(1단계) 또는 "매우 낮음"(이동에 따른 보건 위협 없음)을 나타내고 있고, 정보 취득이 가능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2단계 또는 3단계(각각 중간 또는 높은 위험)에 해당하고 있으므로,

2020년 8월 21일 CDC가 2단계 또는 3단계 국가에서 미국으로 입국하는 국제 이동자에 대한 검역 권고를 다시 시행하므로,

연방 정부가 계속 바이러스 전염을 늦추기 위해 필요한 노력을 철회하고 공중 보건 및 안전을 위협에 빠뜨리는 정책을 실시하는 가운데, 뉴욕은 뉴욕주에서 코로나19 전염을 완화 및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반드시 시행해야 하므로,

뉴욕은 2단계 또는 3단계에서 뉴욕으로 이동한 모든 이동자에 대하여 필수 격리를 시행하므로,

연방 정부의 격리 제한이 매우 느슨하게 시행되는 가운데 코로나19 전염을 억제하기 위하여 뉴욕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자가격리에 따라 한 장소에 계속 머물러야 하며 이러한 조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므로,

그러므로 이제, 본인 Andrew M. Cuomo 뉴욕 주지사는 헌법과 뉴욕주 법률, 구체적으로 IV조 제1항에 의거해 본인에게 부여된 권한에 따라 다음과 같이 명령 및 지시합니다.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커미셔너가 여행 권고를 발령하고 고속도로 표지판 및 모든 뉴욕 공항 등 모든 뉴욕의 주요 경계 지점에 널리 공표하여 보건부 자가격리 규정에 의거하여 14일간 의무적으로 격리해야 하는 다른 주에서 이동한 모든 이동자에게 이러한 내용을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행정명령(Executive Order) 205호는 이에 커미셔너에게 이러한 여행 권고를 모든 CDC 지정 2단계 또는 3단계 국가에서 미국으로 입국한 모든 여행자에게 적용하여 보건부 격리 규정에 따라 14일 의무 자가격리를 실시하고, 이러한 이동자들이 보건부 이동자 건강 서류를 작성하며 보건부 규정과 공공 보건법(Public Health Law)에 따라 민사 책임을 지도록 할 수 있도록 개정됩니다.

2020년 9월 28일 올버니시에서 본인이 서명하고

주 정부 관인을 날인하여

선포합니다.

주지사

주지사 비서